

사천시민의날조례(안)

의안 번호	18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. 10. 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☐ 제정이유

1995. 5. 10 법률 제4948호 도농복합형 사천시설치에 따라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시민 화합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함

☐ 주요골자

시민의 날 설정 (안 제2조) 매년 5월 10일

☐ 제정조례안: 덧붙임

사천시민의날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사천시의 뜻 깊은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온 시민이 이 날을 경축함으로써 시민화와 애郷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정)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.

제 3 조 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